#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37 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수진・이연희・송옥주

김정호 · 서미화 · 장철민

민병덕 · 김 윤 · 추미애

최기상 · 김태년 · 한창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 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 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,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 비용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건강진단) ① ~ ③ (생	제40조(건강진단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
	단 비용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
	<u>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